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양돈법률상담코너'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



김태욱 변호사

양돈업 등록에 관하여

Q 고구마 농사를 짓던 중 하품 고구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돼지 자돈을 몇 마리 구입했습니다. 성장 후 공판장을 통해 출하하고 싶은데 허가되지 않은 시설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동조 동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돈업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개설한 양돈장 가축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시장,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돈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등록, 허가 없이 사육한 돼지를 출하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게 되면 대개는 처벌을 받게 되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 등의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양돈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양돈장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돈사신축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신축하여 양돈업을 하는 경우 축산법과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축산법 제53조 제3호, 건축법 제78조, 79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피해액 산정에 관하여

Q 저는 화재사고로 모든 150여두와 포유 및 자돈 3000여두, 돈사 4개동이 전소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과 돼지에 대한 보험이 같이 들어 있고요. 손해사정측에서는 돼지 전체 중 피해두수, 건물 전체 중 피해돈사 피해액으로 산출해서 피해액을 산정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괄농장인 우리농장은 비육돈을 위탁받아 키우고 있는데 피해두수/전체두수에서 전체두수에 비육돈을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해두수비율이 작아져서 보상금

이 적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통상 화재보험은 미평가보험이므로 화재발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액 또한 사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본 건 사고와 관련하여서도 귀하께서는 보험가입 당시에 보험 가입금액에 대하여 협의 하신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안과 같이 보험가액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실무상 보험계약의 가입경위를 가장 많이 참고합니다. 만일 가입 당시 위탁 받아 키우고 있는 비육돈을 보험목적에서 제외한다는 귀하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이를 제외하고 보상받으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목적 가액에 위탁 받아 키우시던 비육돈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입경위에 대하여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 사료되므로 청약서상에 얼마나 명확하게 의사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로 내어준 축사의 화재 보상

Q 얼마전 임대로 빌려준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00평 축사가 전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임차인 소유의 축사가 저의 축사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축사라도 가압류를 하려고 했더니 화재난 다음날짜로 다른 사람 앞으로 일억오천 근저당 설정을 했네요. 이런 경우 어찌해야 제 손해를 보상 받을까요?

A 임차인이 배상하기를 거부한다면 일단 임차인 소유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요. 화재 발생 다음날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다른 재산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임차인 소유의 돼지가 있다면 그것을 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돈육으로 국민건강, 양돈으로 농촌건강